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이슈리포트 2016-04

학교협동조합 FAQ

연구원: 조현경, 주수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목차	
I. 배경설명	1
II. 개념이해 FAQ	2
III. 설립과정상 FAQ	4
IV. 운영과정상 FAQ	6

I. 배경 설명

-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학교협동조합 설립매뉴얼, 운영매뉴얼을 통해 정리된 내용과 학교협동조합 임원들이 SNS, 오프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상호 정리해간 내용 그리고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통해 정리된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 공유함.

II. 개념이해 FAQ

Q: 학교협동조합은 어떤건가요?

A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학교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학교안의 다양한 필요를 사업으로 만든 1인1표의 교육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매점, 방과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생한 경제체험을 하며,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학교협동조합은 꼭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며,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를 받는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부처 인가를 받아야 해서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체인만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속성이 강합니다. 학교안의 사업이기에 교육부, 교육청과의 관련성도 커서 현재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학교협동조합들이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학교협동조합은 사업만 하는 곳인가요?

A: 학교협동조합은 교육경제공동체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교육을 달성하는 곳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학생들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협력·창의성·문제해결력과 같은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직 운영과

1) <학교협동조합 설립매뉴얼, 함께 만들어요! 학교협동조합>(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2015) 9페이지 중심으로

경영 관리를 공동으로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참여와 수평적 의사결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닥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며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Q: 협동조합 매점이더라도, 매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점심을 잘 안먹게 되지 않을까요?

A: 학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설립되기 때문에 매점의 운영시간이나 품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조합원간의 회의 등을 통해 학생들 식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협동조합은 매점만 있나요?

A: 현재 설립되는 학교협동조합의 많은 경우 중고등학교 매점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 곳이며, 조합원이 학교에서 머무르고 꾸밀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며 홍보/마케팅/회계 등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협동조합=매점은 아닙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협동조합을 하기 위해 역지로 매점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건 맞지 않겠죠?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교복재활용 등 여러 사업아이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공동농업생산/판매, 현장체험학습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협동조합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고요.

Q: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결합학교와 학교협동조합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A: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을은 마을따로, 학교는 학교 따로였다면 이제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 삶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교육, 진로교육이 중요해져 가는 가운데 학교만으로는 교육적 경험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도 교육자라는 인식을 하며 학교와 함께 교육자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학교협동조합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학교 등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협동조합의 연결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교협동조합은 “사업체”이고 “법인격”이다보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쳐다보기도 싫은 행정과 잡무의 영역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학교협동조합이란 사업 이전에 청소년 공동문제 해결 교육프로그램이며, 창의적/협력적/집단적 진로체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연계고리가 부족하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거나 자체적인 틀을 고민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이 이에 적합하기에 향후 연계는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III. 설립과정상 FAQ

Q: 학교협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되나요?

A²⁾: 학교협동조합 설립과정은 크게는 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 2) 행정상 서류 준비과정, 3) 사업 운영준비과정으로 나뉘집니다. 1)과 관련해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기초교육, 각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스스로 얘기해보기 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으면 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추가적인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뒤 창립총회를 공고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행정 서류 작성들이 필요합니다. 인가가 완료되면 출자금 납입을 하고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한 뒤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상 서류 준비과정과 동시에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필요한 물품 구매, 인력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Q: 설립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신나는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문의와 관련하여서는 은평구 불광역 근처에 있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coopstart@gmail.com 이며, 홈페이지도 <https://schoolcoop.sehub.net/>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한 문의로는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 <학교협동조합 설립매뉴얼, 함께 만들어요! 학교협동조합>(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2015) 13페이지 참조

(02) 399-9379)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협동조합 설립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A: 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을 만드는 과정이자 함께할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며 모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개인사업자로서 준비하는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총회 전 준비과정 2~3개월, 인가진행과정 2~3개월, 사업오픈 준비과정 1~2개월 정도로 잡으셔야 합니다. 겨울방학 전에 논의를 시작하여 1학기 초 신입생 및 신입생학부모 대상 추가 설립동의자 모집을 해간뒤 1학기 중순경 총회를 하고, 9~10월 경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Q: 발기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3): 발기인 모집 및 구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몇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각 주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표할 주체별로 인원을 안배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추후 업무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해줄 교사와 교직원을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상담 답변을4) 인용해보겠습니다.

네,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임원이 되면 그 사람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법률행위란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각종 계약, 계약의 취소, 동의, 해지 등입니다. 따라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임원으로

3) <학교협동조합 설립매뉴얼, 함께 만들어요! 학교협동조합>(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2015) 14~15페이지

4) 2015.2.25 상담내용

http://www.15445077.net/mobile/cooper/qna.php?bbs_no=76&page=1&tbl_name=faq&board_code=view&category=

선출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민법 제8조에 따라 차 후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개별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로 봅니다.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경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조합원의 필요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조합의 경영안정을 이뤄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권리는 조합원이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IV. 운영과정상 FAQ

Q: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설립시 학교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5): 학교협동조합 매점은 학교 공간 안에 매점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때 학교의 시설을 임대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공유재산과 관련한 계약이 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학교 역시 공유재산에 속해서 계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학교협동조합 매점의 경우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원가에 가깝게 공급하는 공익적 후생복지기관임과 동시에 민주시민 교육, 생생한 경제체험을 위한 교육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음처럼 매점 시설과 관련한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수익허가서> 등을 교부합니다. 계약서 내용 및 양식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준비 전에 행정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매점에서 파는 품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A: 학교협동조합 매점의 물품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조합원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해야하기에 시식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품목을 결정해줍니다. 이때 가격, 마진, 품질

5) <학교협동조합 매점 운영매뉴얼, 학교협동조합매점,함께 만들고 운영해요!>(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단, 2016) 6~7페이지 중심으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갑니다.

Q: 졸업생은 탈퇴해야 하나요?

A6): 졸업 후 총회 참석이라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탈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계속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으로서 남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금 환급도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출자금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도 합니다.

Q: 협동조합의 수익이 많으면 조합원이 배당금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므로 다음 협동조합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남는 잉여금은 조합원의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비롯하여 학생 복지 사업에 전액 쓰여집니다.

Q: 회계.세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학교협동조합을 할 수 있을까요?

A: 사실 학교협동조합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보통 회계.세무 관련해서는 조합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회계사.세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월 10~20만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기장료라고도 하는데요. 기장료란 세금신고를 위해 사업체를 대신하여 장부를 작성해 주고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세무사 사무실에 대가로 지급해 주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장료는 매출 1억 미만을 기준으로 월5~10만원, 기타 법인세 조정료가 20~25만원 정도이니 참고바랍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

6) <학교협동조합 매점 운영매뉴얼, 학교협동조합매점,함께 만들고 운영해요!>(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단, 2016) 79페이지

터에서는 2016년 현재 학교협동조합들에 기장료 없이 매월 1회 세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의 종류와 회계의 방법에 대해 학교협동조합 운영준비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